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남북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산림분야 정책 및 연구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본부에 두는 3개 국장급 기구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임범위를 확대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직위에 본부의 3급 또는 4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장 직위에 본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범위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비율을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5개”를 “10개”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321”을 “322”로 하고, 일반직 계 “316”을 “3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5”를 “306”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산림청의 명칭·위치(제24조관련)

명 칭	위 치
북부지방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지방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 안동시
중부지방산림청	충청남도 공주시
서부지방산림청	전라북도 남원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일반직공무원</u> 으로 보한다.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① ----- ----- --- <u>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일반직공무원</u> 으로 보한다.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 ----- ---- <u>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보호국) ① (생 략)	제11조(산림보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 ----- ----- --.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② (생 략) 제27조(국유림관리소) ① (생 략)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u>5개</u>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	<u>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국유림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10개</u>----- ----- ----- ----- ----- -----.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7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2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 10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퍼센트-----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321</u>	<u>322</u>	+1
·	·	·	
·	·	·	
일반직 계	<u>316</u>	<u>31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5</u>	<u>306</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